변경대비표

1. 투자신탁의 명칭: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업종일등 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변경 사유:

- 최근 결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표준편차→97.5% VaR 모형의 일간 수익률 최대손실예상액)
-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변경 반영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2025.01.01) 반영
- 3. **효력발생(예정)일**: 2025 년 03 월 21 일

4. 변경 주요 내용:

[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 의 연혁	_			<업데이트>		
5. 운용전문인력 에 관한 사항	_			<업데이트>		
8.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투자대상] •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채권]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투자비율
	⑥ 집	합투자증권등	<u>5%</u> 이하	⑥ <u>집</u>	집합투자증권등	<u>40%</u> 이하
8.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나. 투자제한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 탁 제1호[채권]		
	투자대상	투자제한	의 내용	투자대상	투자제한	의 내용
	종류			종류		
	집합투자	다른 집합투자기· 권에 투자하는 날		집합투자	<u>이 투자신탁재산</u> 투자기구(제279조	
	증권 투	<u> 전에 구시</u> 다 =	열리 기판으도 그	증권 투	<u> 구시기구(제2/9소</u>	-세 1 8 의 - 의 국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 자 자 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 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 하는 행위 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 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신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 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 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

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측정하였으며, 최근 결산일 기투자위험등급을 측정하였으며, 최근 결산일 기 준으로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이 **6.22%로 4등급** 준으로 3년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이 **14.35%로** 에 해당되는 보통 위험<u>을 지니고 있습니다.</u> 수 <mark>4등급에 해당되는 보통 위험으로</mark> 분류되었습 익률 변동성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니다.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최근 결산일 기준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로 측정하였으|이전 3년간 97.5% VaR 모형의 일간 수익률 최 며, 표준편차가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더 대손실예상액으로 측정하였으며, 97.5% VaR 모 높은 투자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추후 이 투자신탁의 매결산시마다 결산일※ 추후 이 투자신탁의 매결산시마다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 기준 이전 3년간 97.5% VaR 모형의 일간 수익 편차를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 률 최대손실예상액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 급이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 다.

<신설>

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위험	매우	높은	다소	보통	낮은	매우
등급	높은	위험	높은 위험	위험	위험	낮은
	위험	110	위험	0 F	0 F	위험
수익률		25%	15%	10%	5%	0.5%
변동성	초과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10. 집합투자기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형의| 일간 수익률 최대손실예상액이 클수록 더 높은 투자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 투자할 수 있다.

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등급 변경 내역>

<위험등급분류기준 -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 <위험등급분류기준 -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위험	매우	높은	다소	보통	낮은	매우
등급	높은	위험	높은 위험	위험	위험	낮은
	위험	-	위험	-	- -	위험
97.5%	50%	50%	30%	20%	10%	1%
VaR	초과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수익률 변동성: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	
	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로 측정하였으며, 해당	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250)를 곱	
	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	해 산출한 97.5% VaR(Value at Risk) 모형을 사용합니	
	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합니다.	<u>다.</u>	
		※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외화표시 집합투	
		자증권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위	
		시장위험 기준의 위험등급을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 위험등급분류는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u>상이할 수 있습니다.</u>	
13. 보수 및 수	_	<업데이트>	
수료에 관한 사			
항			
14. 이익 배분	나. 과세	나. 과세	
및 과세에 관한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사항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_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집합투자기구에서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집합투자기구 단계에	
		서는 별도의 외부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	
		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	
		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	
		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그림>	<삭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	<업데이트>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	-	<업데이트>	
의 운용실적		<u> </u>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	라. 운용자산 규모	라. 운용자산 규모	
에 관한 사항	- -	<업데이트>	